

편입학생 전형 및 학점 인정 규정

제정 1999. 03. 01	개정 2000. 03. 01
개정 2002. 03. 01	개정 2003. 03. 01
개정 2005. 03. 01	개정 2007. 03. 01
개정 2008. 04. 01	개정 2010. 02. 18
개정 2013. 02. 28	개정 2015. 08. 31
개정 2018. 02. 28	개정 2018. 04. 30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경동대학교(이하 '본대학') 편입학 전형 및 학점 인정, 수강신청, 장학혜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 ① 편입학 전형은 매년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② 모집 단위는 학과(부)별 단위로 한다. (개정 2013. 3. 1)

③ 모집 인원은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3. 1)

제3조 (지원자격) ① 일반 편입학 또는 학사 편입학 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자격 기준은 교육부 대학 편입학 전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모집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5. 8. 31)

② 정원 외 외국인 편입학은 2학년부터 허용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 1학년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③ 전적 대학에서의 징계 사실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 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본 대학 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면접 점수로 인하여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전적 대학의 전공계열에 관계없이 본 대학의 모든 학과(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4조 (선발방법) 필기 및 실기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적인 선발 방법 및 전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5. 8. 31)

제5조 (협력대학 장학) 협력대학으로 협정 조인한 대학의 출신자에 대한 장학 혜택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며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따른다. (개정 2015. 8. 31)

제6조 (학점 인정 범위) ①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10. 2. 18, 개정 2018. 4. 30)

1. 졸업최소이수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2학년 34학점, 3학년 68학점, 4학년 102학점까지 인정한다.

2. 졸업최소이수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2학년 36학점, 3학년 72학점, 4학년 108학점까지 인정한다.

3. 인정범위 이하 수료일 경우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② 편입학생의 재학 의무 학기는 2학년 6개 학기, 3학년 4개 학기, 4학년 2개 학기로 지정한다.

③ 학과(부)는 재학의무학기 기간 중 2학년은 96학점(교양포함), 3학년은 62학점(교양 포함), 4학년은 28학점이상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3. 3. 1)

④ 외국에서 이수한 학점은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를 통하여 인정 한다.

제7조 (교양교과의 인정) 본 대학에서 지정한 교양교과 학점은 편입학 이전 학년까지는 모두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편입학 이후 교양교과는 지정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 (전공과목의 인정) ① 편입학 이전 학년까지의 전공관련 필수학점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편입학 이후 전공교과는 학과(부)에서 지정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사범계학과 의 전공(교직)과목 인정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따른다. (개정 2008. 4. 1, 개정 2013. 3. 1)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③ 편입학 이후의 전공교과 최저졸업이수학점은 2학년 51학점이상, 3학년 45학점이상, 4 학년 21학점이상이어야 한다.(단, 직장인 교과과정 적용자는 2학년 45학점, 3학년 30학점, 4학년 15학점이상)

제9조 (학점 인정 절차) ① 입학처에서는 편입생의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을 <별지서식 1호>에 기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교무처에 송부한다. (개정 2013. 3. 1)

② 교무처장은 위 ①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 2호>에 의한 학점인정표를 각 학과(부)장에게 송부하고, 각 학과(부)장은 이수할 교과목을 지정, 심사 및 작성하여 이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3. 1)

③ 교무처 및 입학처는 입학 서류 및 전형 자료와 함께 위 항의 서식을 4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3. 3. 1, 2015. 8. 31)

④ <별지 서식 2호>의 사본을 본인 및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10조 (인정 학점의 정정) 편입생의 교과별 인정 학점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변경기간 이내에 교무처에 요청한다. (개정 2013. 3. 1)

제11조 (졸업 학점 이수) 편입생은 본대학 학칙시행세칙 제 18조 교과 과정 이수 규정에 의거 전적대학 인정 학점 외에 교과구분별 소정의 잔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한중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례) 학칙 제60조에 따라 한중대학교 특별편입생의 인정학점 및 졸업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2. 28)

1. 한중대학교 재학 기간 중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2. 편입학 이후 졸업최소이수학점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점인정에 관한 조항은 1998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점인정에 관한 조항은 1999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2-1>

편입생 인정학점 심사표[사범계학과용]

성 명		학 번		학과		주임교수	(인)
-----	--	-----	--	----	--	------	-----

전적 대학 교직 인정 과목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비 고
소 계			

전적 대학 전공 인정 과목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비 고
소 계			

